#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46

발의연월일: 2022. 9. 14.

발 의 자:이은주·강민정·강은미

강훈식 • 고영인 • 권인숙

기동민 · 김두관 · 김민철

김상희 · 김영배 · 김원이

김의겸 · 김정호 · 김종민

김주영 · 김한규 · 김홍걸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류호정 • 문정복 • 박범계

박용진 • 박주민 • 배진교

백혜련 • 서영교 • 서영석

송옥주 · 심상정 · 양이원영

양정숙 · 용혜인 · 유정주

유미향 · 유영덕 · 이병훈

이소영 · 이수진 · 이용빈

이용선 · 이탄희 · 이학영

인재근 · 임오경 · 임종성

임호선 · 장혜영 · 전용기

조오섭 • 진선미 • 최혜영

한정애・황운하 의원

(5691)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 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 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 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 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조합비·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사.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 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본다.

-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 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 나.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 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 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 나.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근로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 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 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 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링으로 정한다.
-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 (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第2條(定義)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	1
류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	
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	
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후단 신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u>본다.</u>
<u>&lt;신 설&gt;</u>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
	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신 설>	나.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	2
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	
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	
하는 者를 말한다. <후단 신	이 경우 근로계약

설>

<신 설>

<신 설>

- 3. ~ 4. (생략)
- 5.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 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 (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 祉·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 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6. (생략)

-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로 본 다.
- 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행사하는 자
- 나.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 3. ~ 4. (현행과 같음)
-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 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이하 "근로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 복지·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 한다)· 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 쟁상태를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의하여기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의하여의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 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 다.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

<신 설>

<신 설>

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
  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라 한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원인
-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 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